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1997년 12월 13일
제204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관보, 1997년, 제24호, 페이지341

서 론

이 법률은 이민 부문 사회 관계를 정하고, 이민 절차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기초, 새로운 귀환지에서의 필수 생활 환경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본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이 사용된다.

1) 정착 서비스란 귀환 정착과 통합 센터에서 귀환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법률 컨설팅, 국어 교육, 원할 경우 러시아어 교육, 직업 교육, 재교육, 자격 향상 교육 등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2) 망명자란 정치적 신념, 인종, 종교, 국적, 민족, 특정 사회 계층 소속을 이유로 희생될 수 있는 타당한 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머물 수 없고, 조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위험으로 종전 거주국가에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을 원치 아니하는 자신의 종전 거주국가 이외의 곳에 있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3) 노동 이민이란 개인이 근로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의 다른 국가로 또는

국내상 일시적인 이동을 말한다.

4) 불법 이민이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출입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위반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주란 개인이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또는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민이란 한시적 또는 영구적 거주를 위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7) 이민자란 한시적 또는 영구적 거주를 위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8) 해외이민이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이 영구 또는 한시적 거주를 위하여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9) 해외이민자란 영구 또는 한시적 거주를 위하여 다른 나라로 출국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을 말한다.

10) 이주자란 원인이나 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하거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출국하거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이주한 자를 말한다.

11) 귀환자란 카자흐스탄 민족에 속하는 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주권을 획득한 시점에 다른 나라에 영구 거주했

으나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머무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12)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란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한시적 체류와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13) 귀환이민쿼터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하여 정해진 본 법률에 따라 특혜, 보상금, 일회적 보조금이 보장되는 귀환 가족 수를 말한다.

14) 가족 이민이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이미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시숙소(temporary accommodation center)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귀환자 인정에 대한 청원을 한 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임시 체류 장소를 말한다.

16) 집단 이민이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의 조직적 이주를 말한다.

17) 이주관련 전권기관(이하 전권기관이라 한다)이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주 절차를 관리하고 이주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18) 국내 이주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개인의 영구 또는 임시 및 시즌에 따른 이동을 말한다.

제2조 (이민 관련 법령)

이민 관련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근거를 두며,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이민 규제의 기본 원칙)

이민 규제는 다음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거주지의 자유선택권, 노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출국의 자유, 이동의 자유 보장
- 출생, 사회적 지위, 직위, 재산, 성, 인종, 민족성, 언어, 종교, 신념, 거주지 등 기다 어떤 다른 상황에 따른 차별 금지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 법령이 공화국의 사회 경제 현황, 역사적 전통과 과거,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이민 관련 국제법, 국제기구의 추천에 부합하도록 보장
- 카자흐스탄 인들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의 이주, 그 이주주선, 귀환자의 일자리 창출, 사회 보장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
- 중장기 활동 프로그램에서 사회 경제 및 사회 정치적 상황의 변동 관련 잠재 이주와 이주민의 방향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한 활동안과 사회 경제 촉진조치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의 우발적이고 질서 정연하지 아니한 절차의 예방

- 해당 국가 기관이 이민 절차 정비에 참여
- 정부가 각각의 개인들의 안건 제시와 독립성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할 경우 신거주지 건설에 이민자의 개인적 참여 (1차 대상 – 환경 및 자연 재해 지역에서의 이주자)
- 학업, 직업 교육, 노동 이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법 이민 축소 부문 타국(특히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국가)과의 협력.

제4조 (이민 주체와 그 등록)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타국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에게는 귀환자, 망명자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제조약에 명기된 그 밖의 지위가 부여된다.

합법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한 자는 이민자의 지위를 얻는다. 외교 대표부, 영사 기관, 국제기구 산하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표부 직원, 해외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이민자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할 경우에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민카드가 발급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모든 이민 주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을 통과한 날부터 5일 내에 영구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민 주체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등록된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목록과 등록 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정한다.

제2장 노동 이민

제5조 (노동 이민 실시 절차)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 해외에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근로 활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른다.

노동 이민을 규제할 경우에 국내 노동 시장의 보호가 우선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때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입국한 근로자-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

이 법률의 제11조에 명기된 경우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근로 활동이 노동이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해외에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근로 활동 수행)

군복무중인 자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해외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기된 경우에는 근로 활동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국외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노동 이민에 따른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체류 조건)

노동 이민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국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국가간 협정으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의 국가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관련 허가서 없이 노동을 위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국가간 협정으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내부기관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밖으로 추방당한다.

제8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사영리

활동의 조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사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때 법인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주체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외국 노동인력을 고용한 사기업 주체가 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시민을 교육, 재교육 및 자격 향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장 이민

제9조 (귀환이민쿼터확정)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건의로 당해년도와 (또는) 향후의 귀환이민쿼터를 정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전권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 주(연방단위의 시, 수도)별로 귀환이민쿼터를 배분한다.

제10조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

거주권을 얻은 이민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동등한 의무를 지닌다.

제11조 (이민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다음의 경우 이민자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군부대에 복무하는 자

2) 외교 사절단과 국제기구의 구성원에 포함된 자

3)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학업 또는 실습중인 자

4)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무중인 자

5)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료단체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자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승인된 외국언론매체, 라디오, 텔레비전의 외국인 대표자

7) 자선 인도적 도움을 줄 목적으로 관광객의 신분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체류하거나 사업상 면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자

8) 수상운송수단, 철도, 자동차의 승무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이민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를 정할 수 있다.

본 조의 제1항에 명기된 자의 법적 지위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으로 정해진다.

제12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로 삭제됨)

제13조 (이민정책의 재정 확보)

이민정책의 자금은 공화국 예산과 외국인을 포함한 사인이 기부한 단체의 후원금에서 이를 목적으로 할당된 자금으로 충당된다.

제14조 (귀환자 지위 취득과 (또는) 귀환이민쿼터 포함)

1. 귀환자 지위 취득과 (또는) 귀환이민쿼터 포함에 관한 신청서는 성인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직접 관할지역 전권기관에 제출한다.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인은 전권대리인에게 귀환자 자격 취득과 또는 귀환이민쿼터 포함에 관한 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발급한다.

2. 귀환자 지위 취득과 (또는) 귀환이민쿼터 포함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와 이에 대한 결정의 채택은 관할지역 전권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지역의 전권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귀환자 지위는 신청인이 본 법률의 제1조제11항에 명기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부여된다.

귀환이민쿼터 포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귀환이민쿼터에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인 귀환자의 가족 구성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귀환자에게는 전권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른 증서가 발급된다. 귀환증서는 엄중한 기록문서이고 그 지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4. 귀환자의 지위는 귀환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효력이 종료된다.

5.관할지역의 전권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권기관과 (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명기된 기타 형태의 지원금과 특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본 법률 제29-4조에 명기된 추가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을 제외한 특혜, 보상금, 지원금, 기타 형태의 목적적 구제금융을 받을 권리는 귀환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귀환자의 지위 취득일부터 3년간 보전된다.

2.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역관할 전권기관에 귀환자 지위 취득과 귀환이민쿼터 포함에 관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출한다.

2) 보건기관의 요구에 따라 의료 검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고, 치료 받고, 보건 기관의 명령을 이행한다.

3)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로 인도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주하고, 정착융화센터에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들에게 제공된 장소를 비워준다.

4) 귀환자의 임시배치센터와 정착융화센터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

제15-1조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는 국가기관 형태로 설립된다.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에서의 체류, 적응 서비스 제공

절차와 시간은 전권기관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16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17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18조 (불법 이민자의 고용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소유형태를 막론하고 불법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체류하는 이민자 고용과 관련한 단체장의 고의적 행위와 공증 또는 어떤 법률행위에 참여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정해진 책임이 부여된다.

제4장 이민 형태, 이민자의 입국절차, 거주권

제19조 (가족 이민)

이민자의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그들의 부모, 이민자가 부양하는 자녀 (양자, 양녀 및 종전 거주지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주는 그들의 부모와 양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결정된다. 이 때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없으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떨어져서 이주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은 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제20조 (단체 이민)

단체 이민은 단체로 선조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들의 조직적 이주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1조 (이민자들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절차)

이민자들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의 입국 서류 작성 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22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거부의 근거)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다음의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가) 국가 안보, 사회질서보호 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나) 그 행위의 방향이 헌법 질서의 강압적 변경일 경우

다) 그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주권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토의 통합과 통일성의 위반을 초래할 경우

라) 그가 국가간, 민족간 및 종교적 적대감을 선동할 경우

마)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그 밖의 자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그가 테러행위로 형을 받았거나, 법원에 의하여 매우 위험한 재범자라고 인정된 경우

사) 예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이나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던 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그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과 체류에 필요한 자금의 소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 예전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체류 기간 동안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관세, 통화,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

국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 입국 요청 시 그가 자신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나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추방당한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추방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5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23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영구 거주권에 대한 서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에 대하여 내무부 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거주 증서가 발급된다. 무국적자에게는 무국적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거주 증서와 무국적자 증명서 발급 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24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에 대한 허가서 발급 거부와 취소의 근거)

다음의 경우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에 대한 허가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종전 허가서가

취소될 수 있다.

1) 고의적 불법 이민자, 탈출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범죄 수행으로 기소된 자

2) 유죄 선고를 받기 전 해외에 영구 거주한 구류 시설에서 석방된 자

3)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자

4) 귀환자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태어났거나 예전에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이었던 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정부가 정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지불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 기관의 소견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자

6)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전권기관, 내무기관, 국가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자

7) 국가 간, 민족 간 및 종교적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

8) 그 행위의 방향이 헌법 질서의 강압적 변경인 자

9)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의 통합과 완전성을 침범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10) 테러 행위, 중범죄 또는 특별 중범죄에 대하여 전과가 있는 자. 이 때 범죄의 중대성, 전과의 유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정해진다.

11)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 허가서에 관한 청원을 제출할 때 자신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는 자

13) 만일 이러한 조치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그 밖의 자들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 증서 발급과 무국적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정치적 망명 제공)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정치적 망명 제공에 관한 요청에 대한 이용 또는 거부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26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27조 (귀환이민쿼터에 포함되는 귀환자 가족의 구성원)

귀환자이민쿼터에 다음과 같은 귀환자의 동거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다.

1) 부부

2)부모

3)자녀(양자, 양녀 포함)와 그 가족 구성원

4)가족이 없는 친 형제자매 및 배다른 형제자매.

제28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29조

(2004년 12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3조(2005년 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삭제됨.)

제29-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추방)

이민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정해진 절차와 그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추방된다.

제4-1장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과 그 밖의 지원금과 특별 구제금융

제29-2조 (중앙정부관리기관)

이민 부문 사회 관계를 규정하는 중앙정부기관은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국민의 사회 보장 관련 전권 기관

-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따른 연금의 지급

-카자흐스탄 공화국 장애, 가장의 부재, 연령에 따른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정부 특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가장이 없을 경우 연령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특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특별 보조금의 지급

-국적이 회복된 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규모 정치적 억압 피해자의 재활에 관한 법률로 확정된 보상에 대한 권리의 실현

2) 교육 부문 전권 기관

- 기술, 전문, 고등 및 대학 교육의 전문 학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입학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쿼터의 배정

3) 외무부

-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비자발급 관련 영사 수수료 면제

4) 국방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군복무 유예기간 부여

제29-3조 (지방집행기관)

1. 이민 부문 사회 관계를 규정하는 지방집행기관은 다음을 보장한다.

1) 주(공화국 단위의 도시, 수도)의 지방집행기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른 무료의료지원

2)지역(주 단위 도시)의 지방집행기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특별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특별 사회복지 제공

-고용, 자격 향상, 새로운 직업 지원

-학교,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구, 사회 복지 단체에 필요한 자리 제공

-국어와 러시아어 학습 환경 조성

2.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지방국가관리기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귀환이민쿼터 없이 이주한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특혜와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3.개인의 부업, 과수원, 별장 건축을 위하여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토지할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토지법령에 따라 농업용 농촌 거주지 토지, 이민 토지 지분, 특별 토지 지분, 비축 토지에서 한시적 무상 토지 이용권을 근거로 하여 시행된다.

제29-4조 (귀환이민쿼터로 귀국한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추가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

특혜, 보상금, 지원금, 본 법률의 제29-2조와 제29-3조에 명기된 그 밖의 특별 구제금융 외 귀환이민쿼터로 귀국한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국가는 다음을 보장한다.

1) 세관 관련 전권기관

-관세 징수 없이 국경을 통과한 재산의 운송

2) 전권기관

-영구 거주지까지 교통비와 재산(가축 포함)의 운송비용 보상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 할당

-한시적 보조금 지급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영구 거주지까지 교통비와 재산(가축 포함)의 운송비용 보상,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의 할당과 한시적 보조금의 지급 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5장 이민

제30조 (이민자의 출국 서류 작성 절차)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이민자의 출국 서류 작성 절차를 정한다.

제3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의 출국에 대한 재정 지원)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타국의 영구 거주지로의 출국과 관련된 비용은 이민자의 자체 자금으로 지불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타의 재원으로 지불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해외 영구 거주지로 출국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그와 그 가족 구성원 소유의 재산 및 등가의 재산적 가치를 반출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 외의 곳으로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또는 그 밖의 가치를 지닌 물건의 시민에 의한 반출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련 법령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타른 국가의 영구거주자로 출국한 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해진다.

第3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 거부 근거)

법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이 다음의 경우 거부될 수 있다.

1) 국가 및 법률로 보호되는 기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가진 경우(해당 상황의 종료 전까지)

2) 범죄수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피고로 고소된 경우 (사건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기 전 또는 법원 판결이 시행되기 전까지)

3) 범죄수행으로 형이 선고된 경우 (형기만료 또는 형면제 전까지)

4)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사항의 수행을 회피할 경우 (의무 이행 전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합의 도달 전까지)

5) 기간이 정해진 군복무 수행 시 (군복무 수행 종료 전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군복무 면제 전까지)

6)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을 위한 문서 작성 시 고의로 자신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했을 때 (해당 문서를 작성한 기관에 의하여 문제 사안이 해결 되기 전까지. 단,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사건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기 전 또는 법원 판결이 시행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에게 연체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타국의 영구 거주지로 출국이 거부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국가로 출국 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의 건의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타국으로의 출국에 대하여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이민 절차의 관리

제33조 (전권 기관)

이민 절차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이민 부문 업무의 조정 관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권 기관이 담당한다.

제34조 (전권기관의 권한)

전권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이민 절차를 분석하고 예측한다.

2) 이민 규제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3) 이민 관련 프로그램과 법령을 작성하고, 실현한다.

4) 이민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5) 귀환 이민 쿼터 구성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6) 귀환자와 난민의 지위 취득절차를 정한다.

7) 임시 배치 센터에서의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체류 절차를 정한다.

8)귀환자 정착 및 통합 센터에서의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체류 및 정착 서비스 제공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9) 체류한 귀환자와 난민의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10) 귀환 이민 쿼터에 따라 체류하는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회적 지원금을 지원한다.

11) 전권기관의 지역별 기관의 난민, 귀환자의 지위 취득 및 귀환 이민 쿼터 산입 거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결정을 채택한다.

제35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로 삭제됨.)

제7장 결론

제36조 (청원 심사와 관련된 비용 지불 절차)

귀환자로 인정된 자는 모든 절차 단계에 있어서의 청원 심사 시 관련 비용을 국가 기관이 부담하고, 심사관련 비용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37조 (법률위반책임에 대한 근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범죄, 행정 및 기타 법률 위반을 수행한 이민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의하여 비준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조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제38조 (이민에 관한 국제 조약)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제 조약은 법률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며, 국제 조약에 그 시행을 위해 법률의 제정이 요구될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적용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제조약에 이 법률에 있는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제39조 (분쟁 해결)

이민 관련 분쟁은 본 법률로 정해진 절차 및 법원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4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불법 입국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불법 출국에 대한 책임)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불법 입국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불법 출국에 대한 책임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41조 (국내 이주)

국민의 국내 이주 부문 관계의 절차와 규제 조건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